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 의 자 : 이인영 · 이정문 · 전진숙
김영환 · 김용만 · 복기왕
김성희 · 채현일 · 소병훈
강준현 · 민병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‘국민신문고’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·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1조 신설)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(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)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민원·국민제안·국민참여 등(이하 “고충민원등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“참여포털”이라 한다)을 구축·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·공유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장의 참여포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참여포털에 신청되는 고충민원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

의하여 정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참여포털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1조(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)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민원·국민제안·국민참여 등(이하 “고충민원등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“참여포털”이라 한다)을 구축·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·공유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장의 참여포털 이용을 위하여 필</u>

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참여포털에 신청되는 고충
민원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
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
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
정하는 사항 외에 참여포털의
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